

제7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실시계획

- **실시목적** : 공정거래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민간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
- **일 자** : 5월 17일(월)~5월 19일(수), 3일간(비합숙식 전일교육)
- **장 소** :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 **연수대상** :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 실무책임자 등 총 50명 내외
- **연수과정 구성 및 강의주제**
 - 연수과정 구성 :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토의과정, 공정거래 관련 법체계 및 주요내용과 심결사례 해설 등
 - 강의주제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11개 주제

『신규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는 200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수)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우건설, 엘지전선, 세아, 삼양 등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공시담당 실무자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개요와 적용대상 회사, 적용대상 거래,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의무 등 제도의 주요내용 및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및공시에관한 규정」, 유권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주선 사무관은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 기업의 내부거래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많

있다”며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질의/응답

질의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계열사는 외부감사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있고, 외부감사법에는 자산 70억원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

응답 공정거래법에는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을 따라야 한다.

질의 계열사가 신설 또는 제외된 경우 공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응답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의 신설 또는 제외사항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만 하고 미공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1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과정 실시

본 협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과정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강당(사당동 소재)에서 실시중이다.

본 과정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코자 실시되며, 합격자 총 62명 중 54명이 참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을 이용하여 매주 11시간씩 총 66시간 실시된다.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창업컨설팅협회 이형석 회장,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 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 최영홍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 성해용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사업성 검토기법, 상권분석·입지전략, 가맹본부 및 가맹점 경영관리, 프랜차이즈 세무·금융·회계, 가맹사업의 법률관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법, 상담기법 등 23개 과목을 강의하며, 합격자들은 실무연수를 받은 후 가맹본부, 창업컨설팅회사, 개인 사무실 개소 등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수정,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사업에 관한 컨설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사업성 있는 가맹사업을 발굴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시장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개최



본 협회(www.kfta.org, 김 용 회장)는 지난 4월 29일(목)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에서 『제3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을 포스코, 대림산업, SK, KT 등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독점국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은 공정거래 사건의 90%가 소송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금지청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 질의/응답

질의 최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최대 출자자인 경우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적대적 M&A 위협 등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응답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예외인정 범위에 관하여 관계부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

질의 기업은 사건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법원 제소 등 여러 절차과정에서 인력 및 비용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합의방식(미국의 동의명령 제도를 의미)을 도입하여 행정력과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방안이 있는지?

응답 외국의 경쟁당국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합의과정을 도출하여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기업은 인력 및 비용 등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정권고제도의 활용이 미흡했다.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질의 기업의 투명성 차원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하였는데,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금액 등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응답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 범위 등을 위하여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표본추출을 실시중에 있다. 합리적인 표본이 추출되면 기업에 공표하겠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참석기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SDS, SK, SK가스,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오토에버 시스템즈, 현대하이스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KT, 롯데쇼핑, 포스코, 창원특수강,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대림I&S, 신세계건설, CJ홈쇼핑, KT&G, 웅진, 농협유통, 서울보증보험, 엘엑스케이, 뉴웨이스인터내셔널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하버세이, 한국통제비티, 한국사미트인터내셔널, 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7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4월 19일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 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불개시(반려)

▶ 또와또 등 3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중소기업자,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미만인 중소기업자로 하도급법 적용제의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불개시 하고 신고서를 반려함.

▣ 조정종료(취하)

▶ 정광기술(주)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후 신고인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불성립

▶ 삼호조선(주)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

- 양당사자가 합의를 작성하고 정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청구, 피신고인의 조사불응, 양당사자의 의견상이, 신고인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

▣ 당사자 출석 조정

▶ (주)하이트론시스템즈 1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

▣ 사건처리현황(2004. 1. 1~4. 30)

구분	계	조정불성립	신고취하	불개시
제조	13	1	10	2
건설	11	5	5	1
계	24	6	15	3